

##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 안	
번 호	85

제출년월일 : 1999.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공동출자방식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교육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둠(안 제12조)
-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 전문가의 민간전문가,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 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관계법령 밸류 : 별 첨

#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것을 말한다.
-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3.“공동출자방식지원기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비용분담금에 비례하여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분담금을 말한다.

##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지방세감면)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금융지원)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는다.

제5조(입지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토지등의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방식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대행,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교육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지원기준) ①제5조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 차액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정한다.  
②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충청북도 내부규정으로 운영한다.

제9조(공유재산매각및임대) ①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기간, 임대요율, 감면대상,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제13조제2항및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효과를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등에대한지원)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지역내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외국인투자지원체제

제11조(외국인투자진흥관설) ①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진흥관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외국인투자진흥관은 영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영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에 따른 민원업무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①외국인투자에 따른 각종 민원의 처리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과견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유치전문가활용)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의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등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공공부문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 또는 민간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및 외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비용 지원여부는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한다.

#### 제 4 장 보 칙

제1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군유치활동지원) ① 도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민원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군에 투자유치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리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규발췌

### 【외국인투자촉진법】

- 법 제3조(외국인투자보호등)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인하, 교육 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둔다.
- 법 제16조(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협의·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영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 영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약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7.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